안심역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공급 : 4월 28일(월) / 1순위 : 4월 29일(화) / 3순위 : 4월 30일(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 17284호(2014. 04. 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청약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간편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청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바뀌기입법자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4. 23)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하고, 동규칙 제18조 ⑤항의 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법 및 일반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 우선 배정 희망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다른 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3.5.31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의 개정 (2013.5.31)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이 기존75%에서 40%로 낮아졌으며, 85㎡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가입기간에 따른 추첨제 방식이 적용됩니다.(다주택 보유자도 가점제로 낮은 청약 1순위 가능함. 단, 주택수에 대한 감점은 그대로 유지됨. 가점에서 낙첨시엔 다시 추첨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가입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불가에 따른 책임을 당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관람안내 : 견본주택에는 주택형 84A1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홈페이지 분양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 서비스 안내 :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통한 사전 체험을 권함]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516-11외 20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14~18층 4개동 총 3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 총 108세대 : 일반특별공급 : 33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 3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33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9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소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총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일반(10%)	다자녀(10%)	신혼부부(10%)	노부모(3%)	소계	
민영주택	2014000364-01	84.9962	A1	84.9962	27.2925	112.2887	41.2516	153.5403	57.9087	17	17	17	5	56	120	176
	2014000364-02	84.9637	A2	84.9637	23.6511	108.6148	41.2359	149.8507	57.8865	4	4	4	1	13	36	49
	2014000364-03	84.6600	B	84.6600	26.9509	111.6109	41.0886	152.6995	57.6796	12	12	12	3	39	87	126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계가공실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일반 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 (㎡)	해당동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 도 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차	계약금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시	2014.6.16	2014.08.11	2014.11.10	2015.03.10	2015.07.10	2015.10.12	2016.01.12	
84.9962 (A1)	102동 103동 104동	1층	10	86,023	169,977	256,000	10,000	1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76,800
		2층	10	86,023	185,977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81,600
		기준층	146	86,023	191,977	278,000	10,000	1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83,400
		최상층	10	86,023	201,977	288,000	10,000	1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84.9637 (A2)	101동 104동	2층	2	85,724	184,276	270,000	10,000	1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81,000
		기준층	44	85,724	186,276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81,600
		최상층	3	85,724	199,276	285,000	10,000	1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85,500
84.6600 (B)	101동	1층	3	85,665	170,335	256,000	10,000	1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76,800
	102동	2층	8	85,665	186,335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81,600
	103동	기준층	107	85,665	192,335	278,000	10,000	1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83,400
	104동	최상층	8	85,665	202,335	288,000	10,000	1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견본주택 참고용 이미지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 상한관련 범위 내에서 층별차등을 감안하여 자율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소요자 이외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금액과 발코니 확장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이 의결된 되었으며, 분양계약시 무상으로 일괄시공합니다.
• 정액에서 초과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료 부담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와 "대한주택보증(주) 지정하는 시공사 지정 및 그 외의 공동계약이 성사될 시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하기로 하는 보증료 일체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발코니 설계를 개인적취향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용면적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계가공실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일반 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분양대금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 (㎡)	해당동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 도 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차	계약금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시	2014.6.16	2014.08.11	2014.11.10	2015.03.10	2015.07.10	2015.10.12	2016.01.12	
84.9962 (A1)	102동 103동 104동	1층	10	86,023	169,977	256,000	10,000	1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76,800
		2층	10	86,023	185,977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900	27,200	27,200	27,200	81,600
		기준층	146	86,023	191,977	278,000	10,000	1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83,400
		최상층	10	86,023	201,977	288,000	10,000	1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84.9637 (A2)	101동 104동	2층	2	85,724	184,276	270,000	10,000	1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81,000
		기준층	44	85,724	186,276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81,600
		최상층	3	85,724	199,276	285,000	10,000	1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85,500
84.6600 (B)	101동	1층	3	85,665	170,335	256,000	10,000	1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76,800
	102동	2층	8	85,665	186,335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81,600
	103동	기준층	107	85,665	192,335	278,000	10,000	1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83,400
	104동	최상층	8	85,665	202,335	288,000	10,000	1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 상한관련범위 내에서 층별차등을 감안하여 자율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소유자 이외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금액과 발코니 확장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이 의결된 되었으며, 분양계약시 무상으로 일괄시공합니다.
• 정액에서 초과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료 부담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와 "대한주택보증(주) 지정하는 시공사 지정 및 그 외의 공동계약이 성사될 시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하기로 하는 보증료 일체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발코니 설계를 개인적취향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용면적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계가공실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일반 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품목 (단위 :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84.9962 (A1)	84.9637 (A2)	84.6600 (B)
마이너스 옵션금액	22,294,291	22,332,140	23,153,698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에너지등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Ⅱ. 신청자격 · 방법 및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접수일시 및 장소

구 분	특별공급신청 및 당첨자선정 일시	장 소
특별공급 신청	2014. 4. 28.(월) 10:00 ~ 14:00	인심역 우방아이유쉘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4. 4. 28.(월) 16:00	

※특별공급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해서 바랍니다.

■ 신청방법 : 8층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①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이의는 접수마감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업주체는 당첨자를 선정하여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절차를 거쳐 당첨동호수를 배정결정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통보하겠음
②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해 오면서 세대주 아버 바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③ 상기 8층 청약 후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당첨자발표일(2014. 4. 23) 이후 발생명세표 하여야 하며, 상기 구비서류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함

■ 특별공급 공통 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주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제4호, 제2호 및 제3호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대다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모함의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함 추후에 알 수 있음. 다만 당첨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중 청약통장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본인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 시 신청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 부적격 또는 특별공급규정 및 이면약 등 기타 제반 사항에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및 세대주의 동의 없이 본 주택의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1세대 단위로 가점제에 의한 청약신청 및 중복청약 불가능
• 본인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 여부 확인을 위해 청약신청 접수 후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